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12.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31호로 2014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10조, 안 제12조)
- 나. 도로법과 중복되는 점용료의 감면조항 삭제(안 제7조)
  - 점용료의 감면(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 관련)

다.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점용료 산정기준 삭제

-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준 적용

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 하향 조정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1로 조정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개정 : 강북구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 외 7개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 조문에 맞춰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도로법령 기준을 적용하고자 삭제하였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료 산정기준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14. 7. 15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4. 10. 20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의 산정 기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정 등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도로법』

###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